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736호 2023. 3. 7.(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7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5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라블루노바홀 근거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
-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로 변경[서구 문화회관 → 서구 문화시설]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청라블루노바홀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

- 현행규정의 미비점 보완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 2023년 3월 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 서면이나 전화(팩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주 소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13층 문화관광체육과(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 연락처

☎ 032) 560-3132 / FAX 032) 560-2748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각 1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청라블루노바홀 근거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
-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로 변경[서구 문화회관 → 서구 문화시설]
(제1조,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 제4조의2,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제2호·제4호, 제7조제1항, 제9조제3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2항·제4항, 제18조제5호,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 제22조)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청라블루노바홀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
(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
- 현행규정의 미비점 보완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4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2항제1호·제3호·제3항제1호·제4호·제5호,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5호·제6호·제7호·제8호, 제19조)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
(제2조제3호·제4호, 제5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호·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호·제2호·제3호, 제17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을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용료”라 함은”을 “사람을, “사용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입장료”라 함은”을 ““입장료”란”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고 한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소공연장”을 “공연장”으로 한다.

제4조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4조의2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회관 내 질서”를 “문화시설 내 공공질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종교”를 “종교단체나 정치적 목적”으로, 같은 조 제6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제1736호 인천광역시서서구구보 2023.03.07.(화)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중전의 제6호) 중 “부적당하다고”를 “부적당하다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로 한다.

4. 연 2회 이상 사용료 및 사용 변경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문화시설 사용의 취하 또는 작품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체 또는 사설 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념식, 시상식 등 공공성이 배제된 공연 또는 행사
7. 대관 승인 후 기일 내 계약 미체결 또는 사용료 미납(체납) 시
8.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9. 대관 허가 승인 없이 문화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문화시설의 승인 없이 과도한 입장권 또는 교환권 발행으로 지정 좌석을 초과한 경우
11. 사용자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 또는 진행을 할 경우
1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6조제1항제2호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체납하였”을 “체납 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관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를 “문화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운영한다”를 “운영하며, 이때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는 지정예매처 요율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사용은 중복 되어서는 안된다”를 “사항은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체등”을 “기업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아목 중 “포로가족”을 “포로 가족”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별표”를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4. 심야: 22:00 ~ 24:00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및 제22조에 따른 위탁운영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제12조제2항제2호 중 “회관이”를 “구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회관이”를 “구가”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투자비율”을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구에서 후원하는 무료공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무료공연·전시”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전시

5.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전시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경우”를 “경우: 전부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부 반환

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잔여일 만큼 일할 계산한 사용료 반환

3.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허가사용일 30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

나. 허가사용일 15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다. 허가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20퍼센트 반환

라. 허가사용일 이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총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잔여일 만큼 일할 계산한 사용료 반환

② 사용일자의 변경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한 번만 가능하다. 다만,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양도 및 재대여 금지)”를 “(양도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양도하거나 재대여(再貸與)하지 못한다”를 “양도할 수 없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에”로, “협의”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18조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5호)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 5. 문화시설 내 흡연 또는 음주 행위
- 6. 공연 주체와 사전 협의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 7.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8. 고성, 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9조의 제목 “(홍보물의 부착)”을 “(홍보물의 게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관 내에 부착코자”를 “문화시설 내에 게시하고자”로, “협의”를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여야 하고 공연·행사 등 종료 시 지정 기한까지 철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회관의 회원)”을 “(문화시설의 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회관”을 각각 “문화시설”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회관의 임대)”를 “(문화시설의 임대)”로 한다.

제22조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제1호 관련)

명 칭	위 치
서구문화회관	인천 서구 서달로 190
청라블루노바홀	인천 서구 청라대로 20

[별표 2]

서구문화회관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영화)	행 사		
대 공 연 장	오 전		100,000	1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공연(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공연(행사)의 준비·진행·철거를 위하여 12:00~13:00, 17:00~18:00 사용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의 25퍼센트로 하고, 22: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150퍼센트로 함. ○ 1회로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오 후		130,000	180,000		
	야 간		200,000	280,000		
소 공 연 장	오 전		30,000	45,000		
	오 후		45,000	65,000		
	야 간		70,000	90,000		
회 의 장		1 회	60,000			
전 시 실		1 일	47,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09:00~22:00) ○ 면적 : 314㎡(≒ 95평)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부속설비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1회공연	30,000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 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무대시설	오케스트라피트		1회공연	20,000		○ 장치봉은 공연·행사중 (리허설 포함) 작동할 경우 부과함 ○ 덧마루, 댄스플로어의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가 하여야 함 (관련 소모품 지참) ○ 댄스플로어 사용은 무용공연에 한함		
	댄스플로어		1회공연	100,000				
	덧마루		1회	기본 66㎡ 이하	50,000			
				66㎡ 초과 추가 6.6㎡당	10,000			
	음향반사판		1회	50,000				
	이동용합창단석		1일	60,000				
장치봉		1일	20,000					
무대음향	대공연장		1일	100,000		○ 음향시스템 1일 기본 : 음향콘솔, 메인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2대 ○ 외부 음향시스템 극장 장비 연동시 음향시스템 기본사용료 적용 ○ 이동형 음향장비 : 아날로그 믹서 1대, 파워드 스피커 2대, 마이크 2대, 운영인력 미제공 ○ 건전지 및 소모품 사용자 부담		
	소공연장		1일	50,000				
	이동형 음향장비 (전시실 및 로비 등)	마이크	PIN	1일 1개	30,000			
			W/L	1일 1개	20,000			
			콘덴서	1일 1개	10,000			
			다이내믹	1일 1개	5,000			
	모니터 스피커		1일 1대	10,000				
	빔프로젝트		1회공연	3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1시간	50,000		○ 객석 조명만 사용 시 부과하지 않음		
	소공연장		1시간	20,000				
	특수효과기	핀스포트라이트	1회공연 1대	2kw	20,000			
				포그머신(액별도)	1일 1대		20,000	
				드라이아이스(액별도)	1일 1대		10,000	
무빙라이트				1회 1대	15,000			
냉난방	대공연장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 시세에 10퍼센트를 가산한 범위 내		○ 냉방 : 6월~8월 ○ 난방 : 11월~3월 ※ 기온급변 시 사용자와 협의조정 가능함.		
	소공연장		1시간					
	전시실		1시간					
	회의장		1시간					
의상 및 대소도구			1회	취득가액의 5퍼센트		○ 단위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함		

※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하며, 부속설비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청라블루노바홀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공연 대관 1일이라 함은 09:00 ~ 22:00 까지를 말한다. 단, 체육시설 및 그 밖의 시설 기본 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한다.
- 2) 토.공휴일의 경우 총 시설 사용료에 20퍼센트를 할증 적용한다.
-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본 대관료 할인 및 감면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 가) 공연장의 평일 사용에 한해 09:00~1200 이용시 공간 사용료의 40퍼센트를, 13:00~17:00 이용시 공간 사용료의 30퍼센트를, 09:00~17:00 이용시 공간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 나) 장기대관(10일 이상의 대관)의 경우 실 사용료에 한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다(공간 사용료에 한함, 장비 사용료는 제외함).
 - 다) 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서구 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 대관료에 20퍼센트를 할인 적용할 수 있다(공간사용료 및 장비 사용료 포함)
 - 라) 3개 항목 이상 할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 4) 개별기준 중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 5) 공연 종료 후 공연 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 6) 순수예술은 국악, 풍물, 순수음악, 클래식,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를 말한다. 다만, 공연의 규모 및 상업적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는 뮤지컬 대관료를 적용한다.
- 7) 준비 대관은 무대설치, 연습,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8) 시연회 및 공개 리허설은 공연 대관료에 준한다.
- 9) 냉방비, 난방비는 1시간 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사용자 의무 가동 시간 : 3시간(예열시간 포함)
 - 냉방 6월 ~ 8월 까지, 난방 11월 ~ 3월 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는 관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10)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10퍼센트를 부담한다.
- 11) 부대시설 사용료와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개별기준

-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 1회)

구분 / 시설명		단위 (부가가치세별도)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음악 / 행사	비고
공연장	공연대관	1일	400,000	600,000	800,000	
	연습/준비	오전	80,000	100,000	140,000	
		오후	100,000	120,000	160,000	
		야간	120,000	140,000	180,000	
		철야(3시간)	300,000	320,000	360,000	
전시실	1일 (09:00~22:00)	100,000	- 분할대관 시 대관료의 50퍼센트 적용 - 1일 대관료의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 당 30퍼센트 가산			

※ 순수예술 : 국악, 풍물, 순수음악, 클래식,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

2. 부속시설 사용료

시설명 / 구분		단위	기본사용료		비고	
피아노	연주용	1회공연	60,000			
무대	승강무대	1회공연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장치봉은 공연·행사 중 (리허설 포함) 작동할 경우 부과함 - 덧마루, 댄스플로어의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가 하여야함 (관련소모품 지참) - 댄스플로어 사용은 무용공연에 한함 	
	댄스플로어	1회공연	100,000			
	덧마루	1회	기본 66㎡ 이하	50,000		
			66㎡ 초과 추가 6.6㎡당	10,000		
	이동용합창단석	1일	60,000			
장치봉	1일	20,000				
음향시설	기본사용료		1일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향시스템 1일 기본 : 음향콘솔, 메인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2대 - 외부 음향시스템 극장 장비 연동시 음향시스템 기본사용료 적용 - 이동형 음향장비 : 아날로그 믹서 1대, 파워드 스피커 2대, 마이크 2대, 운영인력 미제공 - 실황 녹화는 정면 전체화면 기준, 영상파일 제공 / 저장매체 지참시 - 건전지 및 소모품 사용자 부담 	
	이동형 음향장비 (전시설 및 로비 등)		1일	30,000		
	마이크	PIN	1일 1개	30,000		
		W/L	1일 1개	20,000		
		콘덴서	1일 1개	10,000		
		다이내믹	1일 1개	5,000		
	모니터스피커		1일 1대	10,000		
	빔 프로젝트 (12,000Ansi)		1회	150,000		
비디오 녹화		1회	40,000			
조명시설	기본조명		1회	50,000	- 객석 조명만 사용 시 부과하지 않음	
	FOLLOW PIN		1회	20,000		
	무빙 라이트		1회 1대	15,000		
	포그 머신(액별도)		1대	20,000		
의상 및 대·소도구		1회	취득가액의 5퍼센트		- 단위 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함	
냉·난방	공연장	1시간	시설 별 시간 당 연료 (전기포함) 시가에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범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냉방 : 6월 ~ 8월 - 난방 : 11월 ~ 3월 	
	전시설					
	다목적홀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하며, 부속설비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u> <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의 대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회관</u>"이란 공연장, 전시실, 회의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p> <p>2. "<u>회관의 사용</u>"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p> <p>3. "<u>사용자</u>"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u>자</u>를, "<u>사용료</u>"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u>입장권</u>"이란 문화행사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u>입장료</u>"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u> <u>조례</u></p> <p>제1조(목적) ----- <u>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u> -----.</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u>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고 한다)</u>"이란 별표 1과 같다.</p> <p>2. "<u>문화시설</u>----- ----- -----.</p> <p>3. ----- ----- <u>사람을, "사용료"란</u> ----- -----.</p> <p>4. ----- ----- <u>"입장료"란</u> ----- -----.</p>

5. (생략)

<신설>

제3조(대관의 범위) 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시설: 대·소공연장, 회의장, 전시실

2. (생략)

② (생략)

제4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대관심의) 회관의 대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관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3.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2조의2(명칭과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대관의 범위) ① 문화시설-----

-----.

- 1. ----- 공연장-----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문화시설-----

-----.

제4조의2(대관심의) 문화시설-----

-----.

제5조(사용의 제한) -----

문화시설 -----
-----.

- 1. 문화시설 내 공공질서-----

2.·3. (현행과 같음)

4. 연 2회 이상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관 사용의 취하사실
이 있는 경우

5. 종교 및 상품판매를 위한 공연
또는 행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
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허가취소등) ① 구청장은 다

4. 연 2회 이상 사용료 및 사용 변
경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납부하
지 아니하고 문화시설 사용의
취하 또는 작품 변경 사실이 있
는 경우

5. 종교단체나 정치적 목적 -----

6. 기업체 또는 사설 단체에서 진
행하는 기념식, 시상식 등 공공
성이 배제된 공연 또는 행사

7. 대관 승인 후 기일 내 계약 미
체결 또는 사용료 미납(채납) 시

8.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9. 대관 허가 승인 없이 문화시설
을 사용한 경우

10. 문화시설의 승인 없이 과도한
입장권 또는 교환권 발행으로
지정 좌석을 초과한 경우

11. 사용자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 또는 진
행을 할 경우

1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의 사용이 불가
능할 경우

13. ----- 부적
당하다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6조(허가취소등) ①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생략)
-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6. (생략)

제7조(입장료 징수) ① 입장료는 회관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되, 공연 또는 행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장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지정예매처에서 예약 판매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예매처는 공연 및 행사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입장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1. (현행과 같음)
- 2. -----
----- 문화시설 -----

- 3. -----
----- 체납 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 -----
- 4. ----- 문
화시설 -----

5.·6. (현행과 같음)

제7조(입장료 징수) ① ----- 문
화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

-----.

② -----

----- 운영
하며, 이때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
는 지정예매처 요율에 따른다.

제9조(입장료 감면) -----

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용은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 1. (생략)
- 2. 공공기관(학원포함)과 기업체 등에서 100명 이상 일시 이용 시 입장료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
- 3. 회관에서 모집한 정기회원에게 입장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
 - 가. ~ 사. (생략)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다만----- 사항은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 1. (현행과 같음)
- 2. ----- 기업체 등-----
- 3. 문화시설-----
- 4. -----
 - 가. ~ 사. (현행과 같음)
 - 아.-----

----- 포로가족
 -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 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

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생략)

제11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자에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관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1. ~ 4. (생략)

③·④ (생략)

제12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5.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화시설----- 각 호-----

----- 별표 2 및 별표 3-----
-----.

1. ~ 3. (현행과 같음)

4. 심야: 22:00 ~ 24:00

②-----

----- 문화시설-----
-----.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국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및 제22조에 따른 위탁운영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공연·행사 및 전시 또는 구가 운영하는 문화활동단체 이용 시

2. 회관이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공연

3. 회관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연. 단, 유료 공연에 대하여는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한다.

4. ~ 6.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구에서 후원하는 무료공연

2.·3. (생략)

<신설>

<신설>

④ (생략)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50퍼센트를 반환한다.

2. 구의 -----

3.구가 -----

----- 협의 -----
-----.

4. ~ 6. (현행과 같음)

③ -----

-----.

1. -----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무료공연·전시

2.·3. (현행과 같음)

4.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전시

5.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전시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 설>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허가사용일 30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4. 허가사용일 15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1. -----
----- 문화시설 -----

가.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부 반환

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잔여일 만큼 일할 계산한 사용료 반환

2. 문화시설 -----
-----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허가사용일 30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

나. 허가사용일 15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다. 허가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20퍼센트 반환

라. 허가사용일 이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총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잔여일 만큼 일할 계산한 사용료 반환

<삭 제>

<신 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사용자의 주의)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재대여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여(再貸與)하지 못한다.

제17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입장권의 회수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 따른 예매수수료는 판매

② 사용일자의 변경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한 번만 가능하다. 다만,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
문화시설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자의 주의) ① -----
----- 문화시설 -----

-----.

제16조(양도 금지) 문화시설 -----

----- 양
도할 수 없다.

제17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

-----.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문화시설 -----
-----.

③ 제2항에 -----

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 결정한다.

④ 입장권의 잔표와 회수 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구청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3년간 보관 후 분쇄 또는 소각한다.

제18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공연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내에 부착코자 할 때에

----- 협의하여 -----.

④ -----
----- 문화시설 -----

-----.

제18조(입장의 제한) -----

-----.

1. ~ 3. (현행과 같음)

5. 문화시설 내 흡연 또는 음주 행위

6. 공연 주체와 사전 협의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7.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8. 고성, 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삭제>

9. ----- 문화시설 -----

제19조(홍보물의 게시) -----

--- 문화시설 내에 게시하고자 ---

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여야 하고 공연·행사 등 종료 시 지정기한까지 철거---

제20조(회관의 회원) ① 구청장은 회관에서 개최되는 공연 및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시설의 회원) ① ---- 문화시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회원은 회관의 필요에 따라 모집하여 운영하며, 연회비는 면제할 수 있다.

③ ----- 문화시설-----

-----.

제21조(회관의 임대) ① ~ ③ (생략)

제21조(문화시설의 임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위탁관리) 구청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관리) ----- 문화시설-----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5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청라블루노바홀 근거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본 규칙에 반영
-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행규칙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서구 문화회관 → 서구 문화시설]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청라블루노바홀 관련 규정을 본 규칙에 반영

- 현행규정의 미비점 보완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 2023년 3월 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 서면이나 전화(팩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주 소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13층 문화관광체육과(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 연락처

☎ 032) 560-3132 / FAX 032) 560-2748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각 1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청라블루노바홀 근거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본 규칙에 반영
-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행규칙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서구 문화회관 → 서구 문화시설]
(제1조,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 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청라블루노바홀 관련 규정을 본 규칙에 반영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
- 다.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제3조의2 신설, 제8조, 제10조제1항)
- 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의 정비
(제3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할수”를 “할 수”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관 사용허가”를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회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회관”을 “점검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문화시설”로, “실시하여”를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비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음 날”을 “다음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별표 제2호”를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면]

서 약 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시설 사용 허가조건을 준수한다.
- 나. 사용시설 및 부속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 다. 사용기간 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서약자가 진다.
- 라. 사용자와 실제 운영자가 서로 다르게 하는 경우 또는 타인(단체)에게 관리 양도 등을 하지 않는다.
- 마. 국가적 행사나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단체명(법인명) :	(인)
	성명(대표자명) :	(인)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제2조제2항제1호 관련)

행사(공연)장소			행사(공연)명		
행사(공연)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전준비		(년 월 일까지 시 ~ 시)	
		리허설및무대연습		(년 월 일까지 시 ~ 시)	
출연 예상인원		장비 반입		연락처	☎ : 휴대폰:
제출서류 1. 행사시 일정표는 2일 전까지 3부 제출 2. 장비 반입시 장비목록을 작성하여 행사 2일전까지 1부 제출 (무대효과기·피아노·비디오촬영·기타 전기 및 무대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 3. 녹음희망 시 녹음매체는 2일 전까지 제출)					

행사관련 부대시설 사용여부

시 설 물		사용계획(시간)		시 설 물		사용계획(시간)	
무대조명	조명	공연행사준비		무대시설	바 텐	총사용량	
		본 행사				공연작동	
	핀스포트라이트	공연행사준비			수평이동무대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본 행사	
	포그머신 (액별도)	공연행사준비			오케스트라 비트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본 행사	
					회전무대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드라이 아이스 (액 별도)	공연행사준비		덧마루	본 행사			
본 행사							
스트로바	공연행사준비		후로링매트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본 행사			
무빙위시라이트	공연행사준비		음향반사판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본 행사			
무대음향	마이크	공연행사준비		기타시설	합창단석	본 행사	
		본 행사				피아노	공연행사준비
	M.R	공연행사준비			본 행사		
	녹음	FILE			냉·난방		
		본 행사				분장실	1층
V.P사용	공연행사준비		지층				
	본 행사		출연자대시길				
				대·소도구 및 기타			

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 규칙 및 무대안전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

문화시설 담당자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 사용(변경) 허가서(제3조제2항 관련)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설이용	기본시설			
	부속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일간)	
사용목적				
사용료	유상			
	무상			
첨부		허가조건 1부.		
<p>「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p>				

[별지 제7호서식]

() 입장권 검인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사용장소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사용목적	사용기간	비고

구분	검인요청		비 고
	수량	금액	
합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 판매기간:
 입장권 판매 검인내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u>문화회관</u>의 대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이전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상·하반기 정기대관 일정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p> <p>② <u>회관</u>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사용허가) ① 인천광역시 서</p>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 <u>문화시설</u>----- ----- -----.</p> <p>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u>」----- ----- ----- ----- ----- ----- ----- ----- -----.</p> <p>② <u>문화시설</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사용허가) ① -----</p>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수 있는 공연, 전시
- 3. 4. (생략)
- ② ③ (생략)

<신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 사용허가 신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6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회관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행사 안내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

----- 문화시설 -----

- 1. (현행과 같음)
- 2. -----
----- 할 수 -----

- 3. 4. (현행과 같음)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

----- 문화시설 -----
----- 사용료 감면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
----- 문화시설 -----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

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전 허가와 반입 시 검사를 마친 후 사용토록 하며 반출 시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생략)

제9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구청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문화시설 -----

-----.

제10조(시설점검) ① 구청장은 회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주 실시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구민에게는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점검) ① ----- 점검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문화시설-----
--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비치하여 -----.

② 정기점검일은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고 월요일은 점검을 위해 휴관한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로 한다.

②-----

-----.
--- 다음날-----.

③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고 점검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삭 제>

제11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11조의 별표 제2호 중 의상 및 대소도구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징수 품목과 금액을 내부 지침으로 매년

제11조(사용료의 징수) -----
-- 별표 2 및 별표 3 -----

지정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조례 제23조
에 따른 위탁관리 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
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① ~ ② (생략)

-----.

제12조(자체 운영규정) --- 제22조-

-----.

① ~ ② (현행과 같음)

